

의안번호	2208053
의 퇴 인	박홍배의원
회 답 일	2025.2.18.
추계번호	25B0780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(제1항) 1. “근로자”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. <u>이 경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,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</u> 가. <u>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로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</u> 나. <u>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</u> 다. <u>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 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하여 설립된 직종, 직업 또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경우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×	• 미첨부 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－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「근로기준법」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추정에 대한 반증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임

-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「근로기준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,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주로서 공무원이 아닌 피고용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반증의 입증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수 있음
 - 사용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을 반증해야 할 경우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재정소요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
- 개정안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관련한 「고용보험법」 등 관계 법률의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 의무지출의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
- 이 밖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¹⁾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²⁾,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³⁾ 등은 「근로기준법」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, 이들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재량지출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재량지출의 경우 사업별 신청 요건이 있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에 의한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수 있음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"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
2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"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다만,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(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.

3)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"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